

## 반입이 금지된 물품



아래 물품은 법률에 따라 일본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 a) 아편, 코카인, 헤로인 등의 마약류, 대마, 아편 흡연구 (吸煙具), 메스암페타민(메스암페타민 성분이 든 의약품도 포함), 향정신성 의약품류 (의료 등의 목적으로 반입하는 것은 제외)
- b) 권총 등 총포 및 총포용 탄알과 권총 부분품
- c) 다이너마이트 등의 폭발물, 화약, 폭약 등
- d) 생물 테러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병원체 등
- e) 화학병기의 원재료가 되는 물질
- f) 통화 또는 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이나 위조 신용카드
- g) 공안 또는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도화, 조각물, 기타 물품(음란 잡지, 음란 비디오테이프 등)
- h) 아동포르노
- i) 위조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반입이 제한된 물품



아래 물품은 법률에 따라 일본 국내로 반입을 제한합니다.

- a) 식물과 동물을 세관검사를 받기 전에 동식물 검역 카운터에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 b) 반입자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의약품, 화장품 등을 반입할 경우에는 수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내복약: 기본적으로 2개월분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등은 1개월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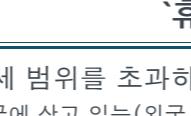
외용약: 품목당 24개 이내

화장품: 품목당 24개 이내

단, 건강 피해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제한이 있습니다.

- c) 업종, 공기총, 도검(칼날의 길이 15cm 이상) 등은 소지허가를 받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국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 면세 구입품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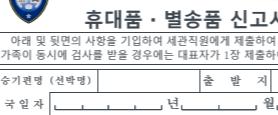


면세로 구입 물품은 수출을 위해 구입한 물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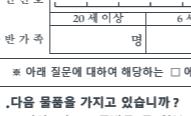
일본에서 면세품을 양도하거나 소비하지 마십시오

출국 시에 공항 또는 항구에서, 세관에 여권 등을 제시해 주십시오

세관에서 필요에 따라 면세 물품의 소지 여부를 검사합니다. 출국 시에 면세 물품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세관에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수출이 금지 또는 규제되는 물품



다음 물품은 법으로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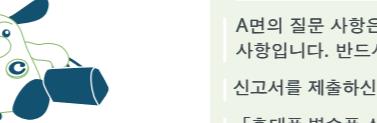
- a) 각성제, 대마초, 향정신약, 마약, 아편, MDMA 등 불법약물
- b) 아동포르노
- c) 가짜브랜드, 해적판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다음 물품은 법으로 수출이 제한됩니다.

식물(과일, 야채, 쌀 등을 포함)이나 동물(조류, 생고기, 말린고기, 햄 등을 포함)은 종류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총포나 초고성능컴퓨터 등은 수출무역관리령에 따라 수출이 규제되고 있으며 이런 물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경제산업성에서 절차를 행하여 세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관검사에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신고서를 제출하신 분이 직필로 서명해 주십시오.  
「휴대품·별송품 신고서」를 지참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 직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의 기입 예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예

외국에 살고 있는(외국 거주자) 20살 이상 1명이, ●위스키(760ml) 3병 ●브랜디(700ml) 1병 ●궐련 600개비 ●향수 1온스 ●의류 1벌 5만 엔 ●손목시계 1개 15만 엔 ●핸드백 1개 8만 엔 ●반지 1개 12만 엔을 반입하는 경우

일본국세관  
세관 약식 C 제 5300-C호  
**휴대품·별송품 신고서**  
아래 및 뒷면의 사항을 기록하여 세관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동시에 간사를 받을 경우에는 대표자가 1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시 휴대하여 반입한 물품을 다음 표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면 1 및 3에서 모두 「없음」을 선택한 분은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기타품명」란에는 신고하는 입국자 본인 (동반 가족 포함)의 개인적 사용 물품에 대하여 1품목당 해외 시가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송품도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세액 500엔

면세 범위를 초과한 주류 1병이 과세됩니다.  
이 경우, 세액이 적은 브랜디가 과세됩니다.

주	류	4	병	※세관 기입란
담	례	600	개비	
배	견		갑	
	열		개비	
	기		그램	
향	수	1	온스	
기타 품명	수량	가격		
의류	1	50,000		
손목시계	1	150,000		
핸드백	1	80,000		
반지	1	120,000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궐련 400개비가 과세됩니다.

■ 세액 계산 예

15엔/개비(세액) × 400개비(수량) = 6,000엔

담배세·담배 특별세 6,000엔

향수는 면세 범위내입니다.

■ 세액 계산 예

50,000엔(해외 시가) × 0.6 = 30,000엔

30,000엔(과세 가격) × 15%(세율)  
= 4,500엔(관세)

1. 일본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대표적인 물품

- ① 마약, 총포, 폭발물 등 일본으로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 (B면 1, 첨조)
- ② 육가공품, 쇠소, 과일, 동식물 등 일본으로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 (B면 2, 첨조)
- ③ 금지되는 금제품
- ④ 면세 범위 (B면 3, 참조) 를 초과하는 구입품 (산 물품, 선물, 기증품등)
- ⑤ 상용 물품 · 상품·건본 (샘플)
- ⑥ 타인이 맡긴 물품 (여행 가방 등의 운반 도구와 이유가 불분명한 경우 포함)
- \* 상기 항목에서 「있음」을 선택한 분은 입국시에 가지고 온 물품을 B면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관 기입란

연

있음

없음

# 일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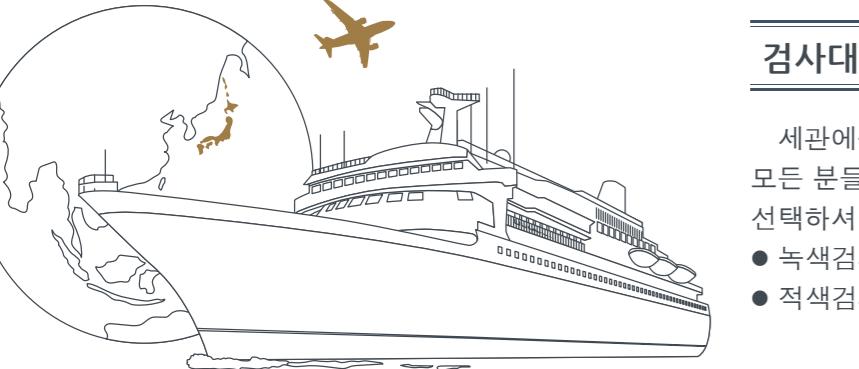
일본에 도착한 모든 분들께서는 입국과 출국 시에 세관절차를 올바르게 거쳐야 합니다.

이 팸플릿에서는 해외에서 일본에 도착한 분들께 세관 절차 및 제한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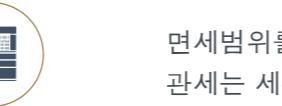
예를 들어 “여행자 휴대품은 어느 정도까지 면세되는가?”, “면세점에서 물품을 살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일본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 반입이 제한된 물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팸플릿이 신속한 세관검사를 받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관상담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시 신고 (“휴대품·별송품 신고서” 작성 및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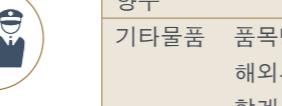
세관에서는 해외에서 입국(귀국)하는 모든 분들께 반입이 금지·제한된 물품의 유무와 면세 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적정한 통관을 위해 ‘휴대품·별송품 신고서’ 1매에 필요사항을 기재하신 후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별송품이 있는 경우, 신고서를 2매 제출해 주십시오.

일본 세관에서는 전자 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Visit Japan 웹을 통해서 세관 신고서의 전자 작성이 가능합니다. 공항 도착 후 전자신고 단말기로 수속을 하고 전자신고 게이트를 이용하면 기다리지 않고 원활하게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Visit Japan Web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디지털청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검사대 선택



세관에는 녹색과 적색의 검사대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서는 아래의 세관 검사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녹색검사대: 면세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적색검사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면세범위를 초과했는지 모르는 경우 관세는 세관검사장에 있는 은행(은행이 없을 때는 세관 공무원)등에 납부하십시오. 또한 스마트폰 앱결제, 신용카드도 사용 가능.  
※ 단, 과세가격이 30 만 엔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반 무역화물과 동일한 수입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면세범위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개인적으로 사용된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하기의 표 범위 내에서 면세됩니다(단, 쌀은 1년간 100kg 이내). 휴대품과 별송품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양쪽 모두를 합하여 면세 범위를 적용합니다.

의류, 화장품 등 여행자 본인이 일본 체류 중에 사용할 신변용품이나 직업 용품으로 세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 이하와 같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물품의 종류 등에 맞는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 이사화물

일본에 1년 이상 체류한 후 이사하는 자 본인 또는 가족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세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사화물에는 이사하는 본인 또는 가족들이 사용했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 일본 입국 전에(선박 및 항공기는 일본 입국 전 1년 이상)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으면, 위와 같은 자동차 등도 포함됩니다.

또는 이사 이외의 목적으로 일본에 일단 반입 했다가 1년 이내에 외국으로 반출하는 자동차 등도 면세됩니다.

## 세율의 적용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관세, 내국소비세 및 지방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상 초과하는 부분에 다음과 같이 간이세율을 적용합니다.

품명	세율	
주류	1리터 당 위스키, 브랜디 럼주, 진, 보드카 리큐어 소주 등 기타(와인, 맥주 등)	800엔 500엔 400엔 300엔 200엔
담배	담배	1리터 당
전자	(1) 궤련형 전자담배 (2) 전용 담배 캡슐 및 카트리지 등을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한 것 ※ 카트리지 등 만을 포장하여 판매되는 것 포함	15엔/개 50엔/캡슐 50엔/카트리지
기타 물품	15%	

## 관세등 캐시리스납부



스마트폰 앱결제, 신용카드 사용 가능  
스마트폰 앱결제



## 신용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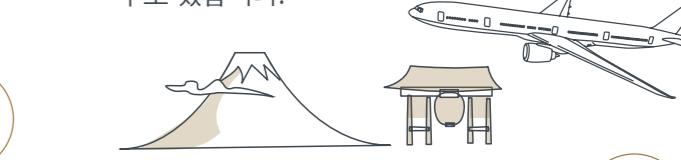


## 별송품

별송품이 있는 경우에는 ‘휴대품·별송품 신고서’를 세관에 2매 제출해 주십시오. 2매 중 1매는 세관에서 확인 도장을 찍은 후 돌려 드립니다.

별송품의 경우에는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반입되는 것으로 별송품을 반입 신고할 때에 세관의 확인 도장을 받은 ‘휴대품·별송품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 면세범위 및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아 반입할 수 있으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여 주십시오.

수하물을 우편 발송하는 경우에는 별송품의 외장(外裝)에 ‘별송품(Uhaccompanyed Baggage)’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일반 우편물로 취급되어 ‘국제우편물 과세통지서’가 발송될 수도 있습니다.



## 현금 등의 반출입



현금 등을 일본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제한은 없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입국 또는 출국 시 세관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휴대한 현금, 수표(여행자 수표를 포함), 약속어음, 유가증권이 100만 엔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외국 통화 및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

- 휴대한 금지금(순도 90%이상)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